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계약원가심사분야 특정감사 —

2023. 11.



1. 일람표

(단위: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1건	0	1	0	0	0	0	0	0
1	과	배수로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0	1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배수로 및 주변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 ☐☐☐☐과에서는 “☐☐ ◆◆◆◆ ◆◆◆◆ 배수로 및 주변 정비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2022. 10. 18. ☐☐건설 주식회사 ◀◀◀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 ◆◆◆◆ ◆◆◆◆ 배수로 및 주변 정비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 ◆◆◆◆ 배수로 및 주변 정비사업	석탑 주변정비 1식	1,001	838	63	2022. 10. 18.	2022. 10. 25. ~ 2023. 6. 29.	☐☐건설 주식회사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하면 추정금액 3억 이상의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고 공사 원가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배수로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공사로 3억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심사를 받지 않고 2022. 2. 3.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터파기 시 나오는 잔토처리의 수량을 현장 내 처리와 장외운반 처리로 중복 계상되었으며, 준공 시까지 감액하지 않는 등 사업비 24,775천 원이 낭비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